#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24 |
|---|---|

제출년월일: 2026. 10. 1.
제 출 자: 송파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재개발·재건축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고, 어르신·청년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 종료 및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폐지

- 국 신설: 환경정원국
- 단 폐지: 전략기획단(한시기구 종료, 2026.12.31.)
- 부서신설: 청년담당관
- 부서폐지: 전략기획과

나. 조직개편 전·후 비교

| | |
|---|---|
| 현 행 | 1의회사무국 6국 1단 1소(4과, 1지소) 2담당관 38과 1사업소(1박물관) 27동 |
| ⇓ | |
| 개편후 | 1의회사무국 7국 1소(4과, 1지소) 3담당관 37과 1사업소(1박물관) 27동 |

다. 조직기능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 정비

- 국 명칭 변경: (전) 도시현대화국 ⇨ (후) 주택도시국
  (전) 교통환경국 ⇨ (후) 교통운영국
- 부서 명칭 변경: (전) 공원녹지과 ⇨ (후) 정원도시과

라. 국(局) 직제 및 부서 편제 조정

| 건제순 | 변 경 전 | | 변 경 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부구청장 직속 |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 | 부구청장 직속 |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, **청년담당관** |
| 2 | 행정안전국 | 총무과, 자치행정과, 도시안전과, 첨단도시과, 민원행정과, 여권과 | 행정안전국 | 총무과, 자치행정과, 도시안전과, 첨단도시과, 민원행정과, 여권과 |
| 3 | 기획재정국 | 기획예산과, 경제진흥과, 재무과, 세무행정과, 세무1과, 세무2과 | 기획재정국 | 기획예산과, 경제진흥과, 재무과, 세무행정과, 세무1과, 세무2과 |
| 4 | 주민복지국 | 복지돌봄과, 생활보장과, 여성보육과, 어르신복지과, 아동청소년과, 장애인복지과 | 주민복지국 | 복지돌봄과, 생활보장과, 여성보육과, 어르신복지과, 아동청소년과, 장애인복지과 |
| 5 | 교육문화국 | 교육협력과, 문화예술과, 생활체육과, 문화유산과, 관광진흥과, 책박물관 | 교육문화국 | 교육협력과, 문화예술과, 생활체육과, 문화유산과, 관광진흥과, 책박물관 |
| 6 | 도시현대화국 | 주택사업과, 주택관리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부동산정보과 | 주택도시국 | 주택사업과, 주택관리과, 도시계획과, **공간개발과**, 건축과 |
| 7 | 교통환경국 | 도시교통과, 주차정책과, 도로관리과, 치수과, 맑은환경과, 청소행정과, 자원활용과 | 환경정원국 | **청소행정과, 자원활용과, 맑은환경과, 정원도시과,** |
| 8 | 전략기획단 | 전략기획과, 공간개발과 | 교통운영국 | 도시교통과, 주차정책과, 도로관리과, 치수과 **부동산정보과** |
| 9 | 보건소 | 보건위생과, 건강증진과, 의약과, 생애건강과, 돌봄건강지원센터(보건지소) | 보건소 | 보건위생과, 건강증진과, 의약과, 생애건강과, 돌봄건강지원센터(보건지소) |

마. 송파2동 주민센터 임시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(안 별표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(2)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관련부서 사전협의: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

※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보육과: 해당사항 없음)

라. 기　　타

(1) 개정문안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, 관계법규 : 별첨

(2) 입법예고: 2026. 9. 23. ~ 9. 29.

※ 근거: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(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붙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　끝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안전국·기획재정국·주민복지국·교육문화국·도시현대화국·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”을 “행정안전국·기획재정국·주민복지국·교육문화국·주택도시국·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사담당관·홍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청년정책, 청년일자리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, 기업 지원, 전통시장 지원, 지역일자리 지원, 청년일자리”를 “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, 전통시장, 기업 지원, 지역일자리, 사회적경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어르신정책수립, 어르신지원”을 “경로정책수립, 경로시설, 경로지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도시현대화국)”을 “(주택도시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주택도시국에 주택사업과·주택관리과·도시계획과·공간개발과 및 건축과를 둔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현대화국장”을 “주택도시국장”으로

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4. 도시공간 기획 · 조정, 대규모 공간개발, 복합공간조성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

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환경정원국) ① 환경정원국에 청소행정과 · 자원활용과 · 맑은환경과 · 정원도시과를 둔다.

② 환경정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청소정책수립, 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,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
2. 자원활용정책수립,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
3. 환경기본계획,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 관리, 대기 · 수질오염 · 소음 · 진동 · 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 · 단속에 관한 사항
4. 공원 · 녹지관리,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의 제목 “(교통환경국)”을 “(교통운영국)”으로 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교통운영국에 도시교통과 · 주차정책과 · 도로관리과 · 치수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통환경국장”을 “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하수도 · 하천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”을 “하수도 · 하천 유지관리, 수방대책 및 수변연계사업”으로 하며,

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5. 지적 및 측량, 부동산중개업, 부동산거래신고,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

별표2의 송파2동의 위치란 중 “송파구 송이로 32(송파동 173)”을 “송파구 가락로 151(송파동 94-35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도시현대화국장”을 “주택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도시현대화국장, 교통환경국장”을 “주택도시국장, 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통환경국장”을 “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”을 “주택도시국장, 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교통환경국장”을 “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”을 “주택도시국장 및 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교통환경국장”을 “교통운영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(훈령포함)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 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·기획재정국·주민복지국·교육문화국·도시현대화국·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을 둔다. | 제3조(국의 설치) ----------행정안전국·기획재정국·주민복지국·교육문화국·주택도시국·환경정원국 및 교통운영국----------. |
| 제4조(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)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·홍보담당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 제4조(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) ----------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----------.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3. 청년정책, 청년일자리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|
| 제6조(기획재정국) ① (생 략) | 제6조(기획재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| ② -----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, 기업 지원, 전통시장 지원, 지역일자리 지원,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| 2.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, 전통시장, 기업 지원, 지역일자리, 사회적 경제-------- |
| 3. ~ 6. (생 략) | 3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제7조(주민복지국) ① (생 략) | 제7조(주민복지국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| ② 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어르신정책수립, 어르신지원 및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| 4. 경로정책수립, 경로시설, 경로지원 ---------- |
| 5. · 6. (생 략) | 5. · 6. (현행과 같음) |

| | |
|---|---|
| 제9조(도시현대화국) ① 도시현대화국에 주택사업과·주택관리과·도시계획과·건축과·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 | 제9조(주택도시국) ① 주택도시국에 주택사업과·주택관리과·도시계획과·공간개발과 및 건축과를 둔다. |
| ② 도시현대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| ② 주택도시국장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4. 도시공간 기획·조정, 대규모 공간개발, 복합공간조성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|
| 4. (생 략) |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|
| 5. 공원·녹지관리,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| <삭 제> |
| 6. 지적 및 측량, 부동산중개업, 부동산거래신고,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| <삭 제> |
| <신 설> | 제10조(환경정원국) ① 환경정원국에 청소행정과·자원활용과·맑은환경과·정원도시과를 둔다. |
| | ② 환경정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|
| | 1. 청소정책수립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,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|
| | 2. 자원활용정책수립,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|
| | 3. 환경기본계획,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 |

| | |
|---|---|
| | 관리, 대기·수질오염·소음·진동·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 |
| | 4. 공원·녹지관리,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|
| 제10조(교통환경국) ① 교통환경국에 도시교통과·주차정책과·도로관리과·치수과·맑은환경과·청소행정과 및 자원활용과를 둔다. | 제11조(교통운영국) ① 교통운영국에 도시교통과·주차정책과·도로관리과, 치수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 |
|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| ② 교통운영국장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하수도·하천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| 4. 하수도·하천 유지관리, 수방대책 및 수변연계사업---------- |
| 5. 환경기본계획,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관리, 대기·수질오염·소음·진동·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 | 5. 지적 및 측량, 부동산중개업, 부동산거래신고,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|
| 6. 청소정책수립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,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| <삭 제> |
| 7. 자원활용정책수립,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| <삭 제> |
| 제11조(전략기획단) ① 전략기획단에 전략기획과 및 공간개발과를 둔다. | <삭 제> |
| ② 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| |
| 1. 도시개발혁신정책, 대규모 개발사업 | |

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

2.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, 복합개발 및 수변연계사업에 관한 사항

[별표2]동주민센터의 명칭·위치 관할구역(제18조 관련)

| 동주민센터명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|---|---|
| 송파2동 | 송파구 송이로 32 (송파동 173) | (생 략) |

[별표2]동주민센터의 명칭·위치 관할구역(제18조 관련)

| 동주민센터명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|---|---|
| ------ | 송파구 가락로 151 (송파동 94-35) | (현행과 같음) |

## □ 관련법규

###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총정원의 변동 없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.

## 4. 작성자

- 작성자 : 주 무 관 행정7급 오세운
- 검토자 : 인사팀장 행정6급 이민하
- 결재자 : 총무과장 행정5급 지혜영